

연구년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42조2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 중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장기간근속한 교원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술적인 자질향상 및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1>
- 제2조 (적용대상)** ① 본 대학교에서 정년트랙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단, 본 대학교의 최초임용자는 6년경과 후 연구년을 허락한다. <개정 2008. 9. 1., 2012. 9. 28.>
② 연구를 위한 교환교수,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는 해외방문연구교원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은 연구년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15.3.1.>
- 제3조 (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는 최종 연구년 이후부터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년 기간 및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단, 근속년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특별 청원할 경우 총 근무년수를 고려하여 연구년을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 2013. 6. 7.>
- 제4조 (연구년의 기간)** 연구년의 기간은 3년 근속에 6개월, 6년 근속에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승인 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
- 제5조 (연구년의 신청)** 제2조의 해당 교원으로서 연구년을 얻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신청서(별표1), 연구계획서(별표2), 연구비 집행계획서(별표3)를 첨부하여 3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년이 허락된 후에는 연구비지원신청서(별표4)를 제출한다. 연구계획서의 경우 1년간은 저서(연주)계획서, 2편의 논문계획서, 국외학술논문 게재계획서 중 하나를, 6개월은 1편의 논문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 (연구년 선발기준)** 학과의 인원배정, 근속년수, 연구년 횟수 및 기간 등을 참고하여 선발하되 교수종합평가 및 연구계획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개정 2005. 2. 3, 2008. 9. 1., 2012. 5. 30.>
- 제7조 (연구년의 허락)** 전조의 신청에 대하여 총장은 총 재직 인원수의 5%이내에서 대학 및 학과의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시 이를 임명권자에게 제청하여 허락 받는다. 단, 총장이 허락할 경우 연구년 인원을 추가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5.3.1.>
- 제8조 (연구년기간 중의 처우)** ① 월보수 : 봉급과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00% <개정 2008. 9. 1>
② 연구비 지원금액과 지급시기는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8.9.1., 2015.3.1.>
③ 연구년 기간 1년까지는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승급, 재임용 등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 승진 및 재직년수 산정에 포함된다. 단, 연구년 중인 교원의 승진심사는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8.9.1., 2015.3.1.>
④ 이미 수행중인 교내 연구과제가 있을 경우 연구년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9.1., 2015.3.1.>
- 제9조 (해외 체류기간)** 국외연구년을 허락받은 경우 1학기는 출국일로부터 최소 5개월을, 1년은 10개월을 해당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3, 2008. 9. 1>

제10조 (의무 및 절차) ① 연구년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물 (연주팜플렛 및 연주CD)과 출간예정증명서 혹은 게재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구결과보고서(별표5)를 제출하거나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15.3.1.>

② 논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국외는 SSCI 혹은 동급의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하며, 저서와 논문의 경우 공히 연구년 연구 지원으로 출판된 것임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8.9.1.,2015.3.1.>

③ 연구결과물 미제출자는 교내 연구비 수혜와 연구년 대상에서 제한을 받는다. <개정 2008.9.1.>

④ 연구년을 연장(6개월 허가 교원이 6개월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종료 3개월 전에 연구년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7)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3.1.>

⑤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 수혜기간의 1배 이상을 본 교에서 정상 복무하여야 한다. 단, 정년에 의하여 의무복무를 다하지 못한 교원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5.3.1.>

제11조 (근무복귀)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복귀신고서(별표6)를 제출하되 국외 연구년 교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의 정규직 임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단, 기간 종료이전 이라도 대학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장이 이사장의 허락을 받아 복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교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

제12조 삭제<2008. 9. 1>

제13조 (제한사항) 연구년 허락을 얻은 교원은 보수를 지급받는 일을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초청 받아 체류하는 국·내외 대학(기관)에서의 강의활동

2.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 및 심사

3. 그 외 총장이 허락하는 사항<개정 2005 .6 .27, 2008. 9. 1, 2015.3.1>

제14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제, 개정은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개정 2011. 1. 28.>

부 칙(1)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조의 신청대상은 1999학년도 2학기 연구교수로부터 적용한다.

1993년 8월 23일 제 정

1995년 8월 1일 개 정

1997년 7월 4일 개 정

1999년 3월 1일 개 정

2002년 9월 17일 개 정

2005년 2월 3일 개 정

2005년 6월 27일 개 정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5조는 2010학년도 2학기 현재 연구년 중인 교원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8조는 2015학년도 1학기 연구년 실시 교원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구년 신청서

	담당	주임	계장	과장	처장	총장
결 재						

성 명		직 급		학 과	
근속기간			국내		국외
연구년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6개월() 1년 () 해당란에 0표 하세요		기 휴직기간 (기 허락된 휴직상황을 기록하시오)		
신청이유					
연구과제명					
첨부서류 (해당란에 0표)	저서계획서(), 연주계획서(), 국외학술논문 게재 계획서(), 논문계획서()				
위와 같이 연구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2】

연구 계획서

1. 학과 : _____ 직급 : _____ 성명 : _____

2. 연구과제명: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연구배경 :

4)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5) 참고문헌

6) 기타사항: 란이 모자랄 경우 별지사용

신청인 : _____ (인)

【별표3】

연구비 집행계획서

성명		직급		학과	
연구과제명					
연구년 기간	20 . . . - 20 . . . (. . . 년) or (. . . 개월)				
연구비 총액	원				
항 목 별 예 산					
항목	집행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재료구입비					
참고문헌구입비					
인쇄비					
교통비					
회의비					
활동비					
기타					
총계					
<p>위와 같이 연구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인)</p> <p>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p>					

【별표4】

연구비 지원 신청서

결재	담당	주임	계장	과장	처장	총장

성명	직급	학과
연구년기간		
연구과제명		
지원신청금액	원	
첨부		
<p>위와 같이 연구년에 따른 연구비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p>		

【별표5】

연구결과 보고서

결 재	담당	주임	계장	과장	처장	총장

성 명		직 급		학 과	
연구년기간					
연구과제명					
연구결과내용					
결과물첨부					
<p>제10조 (의무) ① 연구년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물 (연구팜플렛 및 연주CD)과 출간에 정증명서 혹은 게재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구결과보고서(별표5)를 제출하거나 이를 발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논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국외는 SSCI 혹은 동급의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하며, 저서와 논문의 경우 공히 연구년 연구비로 지원받아 출판된 것임을 표기해야 한다.</p> <p>③ 연구결과물 미제출자는 교내 연구비 수혜와 연구년 대상에서 제한을 받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 고 자 (인)</p>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6】

복귀신고서

1. 소속 :
2. 직 위 :
3. 성 명 :

위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_____ (개월, 년) 동안 연구년을 허락받아 각종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휴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별 지 :
5. 참고사항

제11조 (근무복귀)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복귀신고서(별표6)를 제출하되 국외연구년 교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의 정규직 임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귀하

【별표7】

연구년 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결 재	담당	주임	계장	과장	처장	총장

성 명		직 급		학 과	
연구과제명(당초)					
연구기간(당초)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변 경 사 항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소속)학과장: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